“보험계약”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 특약

제 1조 [목적]

제 2조 [용어의 정의]

제 3조 [특약의 적용범위 및 체결]

제 4조 [특약의 효력]

제 5조 [특약의 소멸]

제 6조 [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(독촉)와 계약의 해지]

제 7조 [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)]

제 8조 [주계약 약관 및 규정의 준용]

“보험계약”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 특약

제 1조 [목적]

이 특약은 보험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합니다)에서 별도로 정한 보험계약(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합니다. 이하 “보험계약”이라 합니다) 변경에 따른 정산액 분할납입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.

제 2조 [용어의 정의]

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,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계약관계 관련 용어
   가. 계약자 :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.
   나. 피보험자 :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.
2.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
   해약환급금 :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.
3.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
   보험기간 :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.

용어해설

[해지]

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제 3조 [특약의 적용범위 및 체결]

이 특약은 “보험계약”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해 계약자적립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 금액 중 제5조(적용대상 정산액 및 분할납입금액에 관한 사항)에서 정한 적용대상 정산액(이하 「정산액」이라 합니다)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와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체결됩니다.

제 4조 [적용대상 계약]

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
1.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자적립액의 차이가 발생하고, 이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한 계약
2. 이 특약의 적용대상 정산액이 10만원 이상이면서 분할납입금액이 1천원 이상인 계약
3. 이 특약의 적용대상 정산액이 해당 계약의 정산액 발생시점 해약환급금 이하인 계약
4. 주계약이 자동갱신되지 않는 계약
5. 단체취급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
6. 정산액 발생시점에 “보험계약”대출의 잔액이 없는 계약

⑦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계약

제 5조 [적용대상 정산액 및 분할납입금액에 관한 사항]

① 이 특약의 적용대상 정산액은 해당 계약에서 정산액이 발생한 주계약 또는 특약 각각의 정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. 다만, 자동갱신되는 특약의 정산액은 제외합니다.

② 이 특약에서 정하는 분할납입금액 및 최종분할납입금액은 이 특약의 “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”에 따라 산출합니다.

③ 이 특약을 가입한 계약자는 분할납입기간 중 중도에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직전 분할납입금액 납입일 시점부터 일시납입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비용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.

④ 제3항의 분할납입기간은 계약의 잔여 납입기간과 5년 중 긴 기간 이내로 운영한다. 다만, 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분할납입기간을 계약의 잔여 보험기간 이내로 합니다.

⑤ 이 특약의 체결 시점에 정해진 분할납입기간은 그 이후에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제 6조 [특약의 효력]

① 제3조(특약의 적용범위 및 체결)에 따라 이 특약이 체결된 때(이하「체결일」이라 합니다)부터 “보험계약”은 정산액을 일시에 납입한 것과 동일한 계약변경 효력을 가집니다.

② 계약자는 정산액을 대신하여 분할납입기간 동안 분할납입금액에 체결일 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비용을 더한 금액(이하 「최종분할납입금액」이라 합니다)을 매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. 분할납입금액 및 이자비용에 대한 계산은 이 특약의 "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"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.

③ 제2항의 납입기일은 “체결일” 이후부터 도래하는 “보험계약” 의 납입기일로 합니다.
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.

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종분할납입금액의 납입 완료 이전에 보험료, 계약자적립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.

⑥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최종분할납입금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. 계약자가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에 이자비용을 더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⑦ “보험계약”의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최종분할납입금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. 계약자가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에 이자비용을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⑧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 잔여 분할납입금액에 직전 최종분할납입금액 납입일 시점부터 일시납입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비용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. 이자비용에 대한 계산은 이 특약의 "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"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.

제 7조 [특약의 소멸]

① 계약자가 최종분할납입금액의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납입을 완료한 때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어 효력이 없습니다.

② 피보험자가 최종분할납입금액의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제6조(특약의 효력) 제8항에서 정한 일시 납입금액을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,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이 없습니다.

제 8조 [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(독촉)와 계약의 해지]

계약자가 최종분할납입금액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회사는 "보험계약"의 약관「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(독촉)와 계약의 해지」조항에 따라 납입최고(독촉)와 "보험계약"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.

제 9조 [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]

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"보험계약"의 부활(효력회복)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"보험계약" 약관「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」조항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을 취급합니다.

제10조 [주계약 약관 및 규정의 준용]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